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 8. 20 선고 2020나177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 8. 20 선고 2020나1771 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 9. 24 선고 2019가합586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병훈

피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라움

담당변호사 부종식

변론 종결2021. 7. 2.

판결 선고2021. 8. 20.

제1심판결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 9. 24. 선고 2019가합586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81,832,6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다.' 항을 추가하고, 제14행의 '다.'를 '라.'로 고쳐 쓴다.

「다. 원고는 B에 대해 2015. 4.경 내지 5.경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요양기관 개설기간(2012. 7. 1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동안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4,198,792,560원에 대한 환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6행부터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졌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의료기관이 이를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요양급여비용 전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21669 판결 등 참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 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그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의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 명의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징수처분의 상대방이 되고, 명의를 대여받아 해당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한 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부당이득징수처분의 상대방이 된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두45190 판결).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23718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277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의사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진료행위를 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은 2012. 7. 11.경부터 C가 개설한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B이 사무장 병원에서 근무한다는 내용의 공익신고가 접수되어 원고가 자체 조사를 시작했던 사실, B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범죄사실로 2015. 3. 31. 기소되었고, 원고가 2015. 4.경 내지 5.경 이 사건 환수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 사건 환수처분에 따라 요양급여 환수채권이 성립될 기초 법률관계가 존재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요양급여 환수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2015. 4.경 내지 5.경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요양급여 환수채권이 성립하였는바, 원고의 B에 대한 요양급여 환수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725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B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4,198,792,560원에 관한 부당이득 환수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사해행위이고, B은 사해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 제5면 아래에서 제5행의 '나.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5행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이 법원 증인 B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견종철

판사이은상

판사김시원